

의 選手團에 소속된 者는 射擊을 할 수 있도록 하고, 射擊場設置 者 등이 許可官廳의 監督 또는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罰則을 罰金에서 過怠料로 轉換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용역경비업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인

1999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김기재

◎法律 第5,940號

用役警備業法中改正法律

用役警備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題名 “用役警備業法”을 “警備業法”으로 한다.

第3條의 題目 “(用役警備業體의 制限)”을 “(警備業體의 制限)”으로 하고, 同條중 “用役警備業”을 “警備業”으로 한다.

第5條 各號의 一部分중 “用役警備業”을 “警備業”으로 하고, 同條 各號들 다음과 같이 한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이 失效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營業許可取消處分을 받은 法人의 任員으로서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第6條의 題目 “(用役警備業者등의 義務)”를 “(警備業者 등의 義務)”로 하고, 同條第1項 및 第2項중 “用役警備業者”를 각각 “警備業者”로 하며, 同條 第3項중 “用役警備業者”를 “警備業者”로, “用役警備業”을 “警備業”으로 하고, 同條第4項 및 第5項중 “用役警備業者”를 각각 “警備業者”로 하며, 同條 第6項을 削除한다.

第6條의3의 題目 “(警備指導士의 資格令)”을 “(警備指導士의 試驗令)”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30歲이상인 者로서”를 “第7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로서”로, “內務部令”을 “行政自治部令”으로 하며, 同條第2項 中 “內務部令”을 “行政自治部令”으로 하고, 同條第3項을 削除하며, 同條第4 項중 “應試資格, 試驗科目”을 “試驗科目”으로 한다.

第6條의4를 削除한다.

第6條의5第1項第2號중 “第6條의4”를 “第7條第1項”으로 하고, 同條第2項第1 號 및 第2號를 각각 削除한다.

第7條의 題目 “(警備員의 缺格事由)”를 “(警備員 등의 缺格事由)”로 하고, 同條第1項중 “警備員이”를 “警備員 또는 警備指導士가”로 하며, 同條第2項 中 “用役警備業者”를 “警備業者”로, “警備員으로”를 “警備員 또는 警備指導 士로”로 한다.

第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8條(服裝 및 裝具) 警備員의 服裝 및 裝具에 관한 사항은 行政自治部令 으로 정한다.

第9條를 削除한다.

第10條第1項중 “用役警備業者는 內務部令”을 “警備業者는 行政自治部令”으

제14167호

관

부

1999. 3. 31. (수요일)

로 하며, 同條第2項중 “用役警備業者”를 “警備業者”로, “內務部令”을 “行政自治部令”으로 한다.

第11條를 削除한다.

第14條第1項 및 第2項중 “用役警備業者”를 각각 “警備業者”로 하고, 同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15條의 題目 “(用役警備協會)”를 “(警備協會)”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2項중 “用役警備協會”를 “警備協會”로 하고, 同條第3項을 削除한다.

①警備業者는 警備業務의 건전한 발전과 警備員의 자질향상 및 教育訓練 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警備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

第15條第4項 各號의 部分중 “用役警備協會”를 “警備協會”로 하고, 同項第1號 및 第6號중 “用役警備業務”를 각각 “警備業務”로 하며, 同條第5項중 “用役警備協會”를 “警備協會”로 한다.

第15條의2第1項중 “用役警備協會”를 “警備協會”로, “用役警備業者”를 “警備業者”로 하고, 同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警備協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共濟規程을 制定하여야 한다.

第16條第1號중 “用役警備業”을 “警備業”으로 하고, 同條第3號를 削除한다.

第17條第3號 및 第4號를 각각 削除한다.

第1條, 第2條第1號 本文·第2號, 第4條의 題目·第1項 前段 및 第12條의2 第2號중 “用役警備業”을 각각 “警備業”으로 한다.

第1條 및 第13條第1項중 “用役警備業務”를 각각 “警備業務”로 한다.

第2條第2號, 第4條第2項 各號의 部分, 第6條의2第1項, 第12條第1項·第2項 各號의 部分·第3項 및 第13條중 “用役警備業者”를 각각 “警備業者”로 한다.

第12條第2項第2號 및 第3號중 “用役警備 都給實績”을 각각 “警備都給實績”으로 한다.

### 附 則

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등에 관한 經過措置)이 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用役警備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用役警備協會는 第15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警備協會로 본다.

④(用役警備協會의 共濟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制定된 用役警備協會의 共濟規程은 第15條의2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警備協會의 共濟規程으로 制定된 것으로 본다.

### ◇用役警備業法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

行政規制基本法에 의한 規制整備計劃에 따라 警備指導士의 資格등과 관련된 規定을 합리적으로 調整하고, 設立과 加入이 強制되던 用役警備協會 관련 規定을 整備하는 등 用役警備業과 관련된 과도한 規制를 改善·緩和하려는 것임.

※시행일 : 公布후 6월이 경과한 날(1999. 10. 1.) <법제처 제공>